

제3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 인권실천 더하기 나누기



2014.11.27(목) 13:00~17:30
안산대학교 자유관_117호

주최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목차

제 3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개요	4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소개	6
기조강연 “형제복지원 사건이 던지는 사회복지현장의 함의”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사무국장)	11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	
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 금형민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5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 정한별 (목감종합사회복지관)	29
인권실천을 위한 사례토론	
1) HIV-에이즈 감염인과 지역사회	35
2) 폭력성을 가진 이용인과 직원의 인권	39
3) 시설이용인의 준비되지 않은 자립욕구	45
4) 사회복지실천가의 출산과 육아 휴직	51
참고자료	
-세계인권선언문	57
-사회복지사윤리강령	61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65

제 3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 인권실천 더하기+, 나누기 ÷”

최근 사회복지실천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현장이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가들이 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실천 활동을 모색하기에 그 구체적인 가치와 방법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I. 개요

1. 일 시 : 2014.11.27.(목) 13:00 ~ 17:30
2. 장 소 : 안산대학교 자유관_117호
3. 참여대상 : 경기지역 사회복지실천가 50여명
4. 주요내용
 - 한국의 사회복지의 인권적 단상을 통해 관점을 확장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사례발표
 - 사회복지 인권실천을 위한 사례 분임토론
5. 워크숍 구성
 - 1) 사 회 : 양도영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2) 기조강연 : “형제복지원 사건이 던지는 사회복지현장의 함의”
 -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사무국장/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3) 주제발표 :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
 - ①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 금형민(우만종합사회복지관)
 - ② 북한이탈주민 자기결정 : 정한별(목감종합사회복지관)
 - 4) 분임토론 : 인권실천사례 토론
 - ① HIV-에이즈 감염인과 지역
 - ② 폭력성을 가진 이용인과 직원의 인권
 - ③ 시설이용자의 준비되지 않은 자립육구
 - ④ 사회복지실천가의 출산과 육아 휴직
 - 5) 분임토론 발표 및 총평 나눔

II.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3:00~13:30	30	등록 및 접수	
13:30~13:35	5	개회 및 인사말씀	
13:35~14:35	60	기조강연	
14:35~15:05	30	주제발표 및 분임토론 사례소개	
15:05~15:25	20	휴식 및 자리배치	
15:25~16:15	50	분임토론	
16:15~16:25	10	휴식 및 자리정돈	
16:25~17:00	35	분임토론 결과 발표 및 총평	
17:00~17:30	30	질의응답 및 폐회	

□ 주 최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구리장애인종합복지관, 단원구노인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아람채노인복지관, 안산평화의집,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에바다마을, 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기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가졌던 권위와 체계를 벗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인권을 바탕으로 더욱 사회복지실천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적 문제를 대중에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영화라는 문화적 매개를 통해 폐쇄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가장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사회복지계에는 일련의 변화가 온 듯 보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인권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했음을 반증합니다.

인간의 사적인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흐름은 당연하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굳건한 신념체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사회복지실천에 그대로 녹여내기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변화된 정책은 아직 실천현장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는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주체들이 만나는 모임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차원의 연대이자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실천가들의 연대이기도 합니다. 실천주체들의 모임이기에, 우리는 현장에서 인권적 실천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을 새로이 공부하고 사회복지

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012년 네트워크 발족 이후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과 정보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실천 방안을 모색해가는 발전적 모임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정책적 환경변화는 외부조건의 형성을 의미할 뿐, 내부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변화는 내부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실천가들이야말로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이 살아 숨 쉬게 만들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 그 현장이 사회복지의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직접 사회복지와 인권을 통합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시도한다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도전과 노력을 스스로 응원합니다.

인권이 밥 먹여주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아직 반문하곤 합니다. ‘인권, 좋지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쓰일 수나 있나요?’라고 말입니다. 애매한 이 말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은 당위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이자 법률용어로서 존재하기 쉽습니다.

또한 인권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오해를 자주 사게 됩니다. 오해는 반감을 만들고 인권실천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인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회복지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인권침해를 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와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는 것 같다.

-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보장 사이의 딜레마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계속 먹으려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사탕을 계속 주란 말이나? 현실을 잘 모르고 인권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무한정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복지실천은 엉망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실천가들도 사람이고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데 왜 이용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는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권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오해들을 해소하려면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단순히 그간 일부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효약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은 ‘100개의 사례가 100개의 인권’이라는 말처럼 절대적 실천방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이용자, 실천가, 기관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강자로부터 약자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뿐입니다.

인권을 학습하고 이해한다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권은 더 이상 귀찮은 하나의 수행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충돌을 해소하는 주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실천의 해법을 찾지 못할 때, 인권은 사회복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열쇠가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와 같은 지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이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인권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며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정말 밥 먹여준다’는 것을.

기초강연

“청산되지 않은 과거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사무국장)

청산되지 않은 과거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글: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사무국장)

“19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중 경찰에 의한 입소 의뢰가 3,117명,
구청에 의한 입소 의뢰가 258명이었다.
국가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 것이다.”

“면담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소되었다”

“일명, 근신소대로 불리는 제7소대, 제13소대는 일상적 구타와 폭행이 자행됐다.
면담자들은 그곳을 ‘아오지 탄광’이라고 불렀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일명 ‘인민재판’에서 반항자들에 대한
공개 구타, 공개 질책, 공개 협박이 진행되었다”

“말 안듣는 사람들만 감금하는 격리실이 20개나 있다”

“사망자 경우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부검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북부산 의원 등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 처리했다”

-> “양00의 경우, 임00에 의한 구타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이
발간하는 <새마음 87. 1월호>에 수록된 86년도 사망자 명단에는 빠져있다”

“개인 통장을 본 사람 혹은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 중 1차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1986년 11월 울산지검의 한 검사가 평 사냥을 위해 어느 산을 올랐다. 안내를 해주던 사람과 차를 타고 지나던 중, 어느 한 사내가 커다란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포착했고, 그 앞에는 사내들이 강제노역을 하는 듯이 보였다.

“저게 뭐냐?”는 질문에 운전을 하며 안내하던 사내는 “형제복지원에서 온 사람들인데, 늘 저렇게 경비를 서며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다. 검사로서 법적인 근거없이 인신을 구속하며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이 엄연한 ‘불법’이라 여긴 검사는 귀가 후 즉시 탐문수사와 인지수사를 진행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왜! 함부로 사람들의 신체를 구속하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주인은 ‘박인근’이라는 사회복지사업가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것도 알았다. 선불리 접근했다가는 아무 것도 건질 수 없을 것 이란 직관 하에 치밀한 압수수색 계획을 짜고 무술을 겸비한 경찰 100여명을 대동할 정도였다고 한다. 삼엄한 경비와 집단적 반발이 있을 경우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이라는 판단 하에서 였다.

그러다 그는 86년 12월 김계원이라는 수용인이 도망치다 걸려 폭행으로 맞아 죽었다는 진술과 근거 자료들을 확보했고, 87년 1월 초, 형제복지원을 급습해 조사한 결과, 1월 17일 박인근 원장은 구속되었다. 우리 사회 가장 유명한 사회복지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전국 부랑인복지시설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그였던 터라 그 충격은 굉장했다. 여하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1987년 3월 22 일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당시 부랑인 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는 약 3,500여명의 부랑인,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이 강제 수용, 감금되어 있었다. 그곳의 일상은 군대나 감옥과 다를 바 없었으며, 숙소 이름도 1소대, 중대, 대대로 불리며 대장, 중장, 소장, 조장 등 수용인이 수용인을 감시, 관리하는 체계였다.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으며, 간호사, 식당근무, 청소, 빨래, 건물관리, 건물 신·증축 등 시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은 수용된 원생들이었고, 상명하복의 수직구조를 통해 일상적인 강제노역과 폭력, 굶김, 감금, 학대, 성폭행이 자행되었다.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의 사망자(형제복지원 자체 추계)가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대책위는 85년, 86년 딱 2년간의 사망자 명단과 사인에 대한 기록 만(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이지만, 신민당조사보고서, 부산시 보고서 등도 형제복지원의 기록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을 입수했는데 당시 사건 이후 신민당 국회의원들의 조사보고서와 김용원 전 검사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시신이 복지원 인근에 암매장 되거나 각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는 진술을 수용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망자 진단서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인 촉탁의로부터 허위로 작성되어 기록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7번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듯,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라든가, ‘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은 왜곡되었고 정치권의 비호로 ‘박인근(형제복지원 원장)’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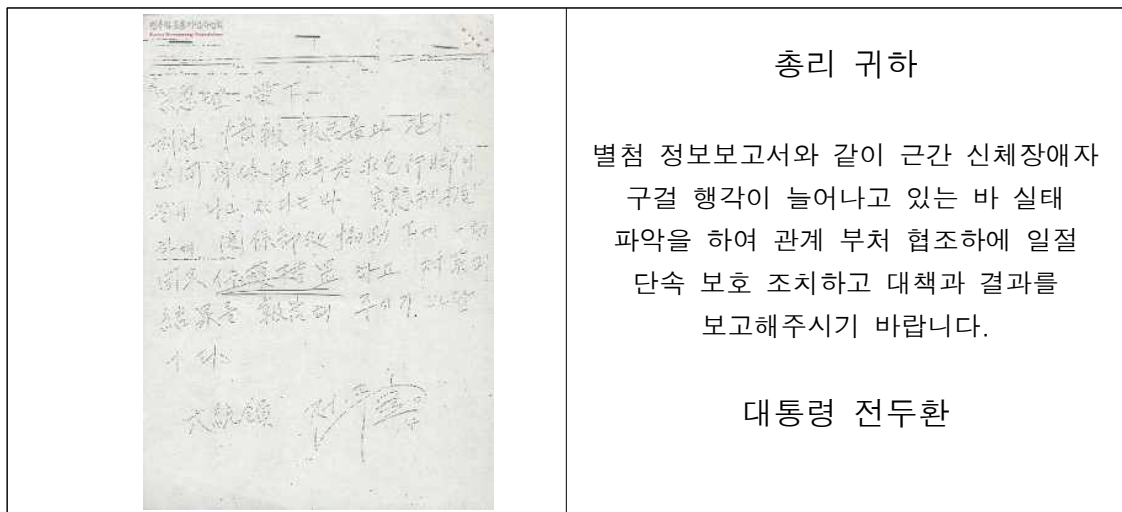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사인에 의한 범죄’로 읽혀져야 할까? 과연 그러할까?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박인근은 1971년 보육시설을 부랑인시설로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시설 사업에 뛰어든다. 당시 육군 상사로 재직 중이던 박인근은 경찰서에 파견 나간 군인신분이었는데, “일본의 조총련에서 부랑인으로 가장한 사람들을 남한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공문을 접하고 나서, 이에 대한 부응으로 거리의 부랑인(아)을 수용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2010년 스스로 제작한 14권짜리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에서 회고하고 있다.

박인근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라는 ‘부랑인등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라는 업무지침이 치안본부와 내무부의 합작품으로 진행되자 ‘수용시설’을 확장해나가기 시

작한다. 정부로부터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고 수용인들의 노동착취로 시설을 증축해 나가며 자신의 출현금 한 푼 없이 시설을 확대해나갔다. 당시 수용인의 머릿수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그 자체가 ‘돈’이었다. 정부 보조금은 사람 수대로 지급되었고, 열악한 의식주와 의료 방치에서도 알 수 있듯, 보조금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개인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통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며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했는데(2013년 긴급조치 위헌 결정), 마을의 통·반장을 예비군 출신으로 하고 한 달에 한번 정기 모임을 통해 수상한 거주인을 색출할 정도였다. 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량한 느낌이 있거나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삼청교육대 혹은 이러한 부랑인 시설로 강제로 배제, 감금했다. 세월이 흘러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가관은 변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전두환은 1981년 4월 10일,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지시를 내린다.



상황이 이러하니,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은 무시무시한 폭력과 학대, 감금 등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가해자였던 박인근은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로 살면서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죽기 전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끈질기게 몸부림 치고 있는 블랙코미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은 정의롭고 맑은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를 참혹하게 슬픈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육아원으로부터 출발해 75년 부산시가 무상 임대 해준 주례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부산시와 [부랑인아일시보호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그 해 12월에는 [내무부훈령 410호]가 공포돼 본격적으로 ‘부랑인’이라는 비(非)국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형제복지원에 감금한다. 그리고 재식훈련과 구타, 강제노역으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었고, 77년 8천600여 평에 달하는 토지를 1천461만원에 부산시로부터 불하받았다. 그 후 도시 확장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2001년 한 건설사에 223억7천800만원에 되팔았다. 24년 뒤라지만 2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재산 축적과정은 이유없이 끌려가 갇은 고문과 강제노역에 시달린 무고한 시민들의 핍박이었으며, 부산시의 특혜, 정권의 비호로 가능했다

는 것이다.

박인근은 수시로 정관을 변경해 목적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오히려 열을 올렸고, 박인근은 전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장, 부산 사회복지법인단체협의회 회장, 장학사업, 종교사업(불법적인 시설 내 교회 운영)을 하며 지역사회 유지로 행세했다. 1998년에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역시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2010년 자신의 회고록과 같은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는 운영 자료집 14권을 제작하기도 했다. 책 속에서 그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부산시가 시킨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뒤틀리고 왜곡된 역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당시 수용인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리에서 껌을 팔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 경찰에 이야기해서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범죄자가 아닌 시민이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 된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 소란을 피웠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군인 출신의 강력한 통솔력을 갖춘 사람”등을 후임 원장 후보로 거론하는 등 역시 운영과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을 뿐, 그 안에 살았던 수용인 대부분은 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아이들은 소년의 집, 정신장애 인들은 또 다른 시설로) 거리에서 생활하다 또 다른 수용소에 갇혀야 했다.

망상에 사로잡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고, ‘형제복지원’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소름이 끼친다는 증언도 있었다. <살아남은 아이>의 공저자이자, 피해자인 한종선씨는 여전히 불 꺼진 어두운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폐쇄공포증 같은 것으로 자가용 탑승을 꺼리고 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당시 함께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그의 누나와 아버지는 현재 26년째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 월간 조선(2012. 9)과 인터뷰를 했던 피해자 박복달 씨 역시 폐쇄 후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형제원에 봉고차 타고 갔어요. 형제원에서 맞았어요”란 말만 반복하는 등 피해자들의 이후 삶은 ‘희망’을 저당 잡힌, ‘살아지는 삶’ 그 자체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에 연락을 취해 온 사람은 모두 200여명 정도 된다. 이 중에는 실종자 가족, 혹은 유가족도 있다. 아직 피해생존자 대부분을 심층 인터뷰 하지 못했지만 3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형제복지원’이란 악령에 사로잡힌 채 숨죽여 살아야했고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치를 떨고 있었다.

반면, 박인근은 형기를 마치고 나와 다시 이름만 바꾼 채 사회복지법인을 계속 운영해왔는데, 28년 동안 형제복지원->재육원->옴의 마을->형제복지지원재단 등 4번에 걸쳐 법인 이름을 바꿔왔다. 2002년에는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후, 2011년 셋째 아들인 박천광에게 이 사장 직을 물려주었다. 2013년 현재는 법인 산하 ‘실로암의 집(36명 거주)’이란 중증장애인요양 시설 하나만 딸랑 운영하면서 사우나, 온천 등 법인을 핑계로 4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박인근의 비리, 부정은 그 때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형제복지지원재단 역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18억 원을 법인 이름으로 불법 대출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으로 2012년 부산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사

안에 따라 1)시정조치 2) 검찰에 고발 3)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2013년 9월 현재까지도 검찰의 수사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 16명의 부산시 공무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모두 주의, 경고 등 가벼운 경징계에 그쳤다. 한 사건에 16명의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무원 비리, 결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부산시는 “2012년 당시 박인근이 ‘치매’라는 이유로 더 많은 사실들은 확인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박인근은 질병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고 혐의를 밝히지 못했지만 셋째 아들인 박천광은 지난 2013년 11월 법정 구속되었고, 2014년 2월 가장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법인 이름을 ‘느헤미야’로 바꾸었다. 그러곤 2014년 4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했다.

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과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 부산시 감사에서 16명의 부산시 공무원이 연루된 것이 드러났는데, 모두 경한 처벌로 끝이 났다. 그래서였을까? 부산시는 이러한 의문을 눈초리를 지우고 싶었는지 형제복지원에 대한 과거 문제부터 시작해 점차 여론화 되자, 2014년 6월 청문회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발 빠른 행정조치다. 그 전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박천광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불구속이었으면 모르지만 구속된 상황에서 박천광의 입을 통해 무엇인가가 터져 나올 것을 두려워 한 것일까? 의문을 꼬리를 잇지만 밝혀내기 어려운 지점들이다.

형제복지원과 2014년의 봄날

4월 말 벚꽃이 한창일 때 ‘여의도 윤중로를 걸어보리라’고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른다.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나 국회에 일이 있어 들를 때도 딱 30분의 여유면 될 것을, 그걸 그저 멍하니 소담쳐다보 듯 침만 흘리며, 그야말로 흘러보냈다. 그 아쉬움을 친구들이 올린 경치 좋은 풍광, 혹은 훑날리는 꽃잎들이 찍힌 폐북 사진 등을 통해 달랬으니, 세상도 참 많이 달라진 걸 실감한다. 그런데 며칠 전 너무 아픈 윤중로의 풍광을 폐북에 올린 친구가 있었다. 사진은 해병대 옷을 입고 오른 쪽 팔뚝에 완장을 찬 아저씨와 5-6명의 시민들이 뭇가를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간 하단에는 다리가 절단되어 기어가며 구걸을 하는 한 아저씨가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있는 순간의 정지된 사진이었다. 내용인즉슨, 벚꽃 축제가 한창인 윤중로에 구걸하는 장애인이 나타나자 ‘거리정화, 질서유지’란 명목으로 해병대 옷을 입은 아저씨가 구걸하는 장애인을 그 축제 현장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병대 출신 아저씨와 시민들의 ‘소란’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소란’의 시작이자 당사자인 구걸하는 아저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는 아마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었을 테고, 국가보조금만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 턱없이 부족해서 수치심과 자존심을 이겨내고 그 축제 현장에 나갈 용기를 내었을 것이다. 새봄을 맞이하는 축제에 들뜬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자체가 쉽지 않았겠지만 삶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 않았을까. 그를 그렇게 방치하고 거리로 내몬 것은 우리이고 국가일 텐데, 우리라고 불리는 그 해

병대 출신 아저씨는 어떤 자격으로 어떤 근거로 구걸하는 장애인을 내쫓으려고 한 것일까? 실은 그 사진이 올라간 그 날,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국회 앞을 지나다 그 비슷한 풍경을 보았다. 아니 좀 많이 다르다. 단지 어깨띠를 두른 수십 명의 아저씨 아줌마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거리 질서를 주문하는 모습이었는데, 나는 왜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조차 가슴 서늘해지는 무엇으로 느꼈을까? 그들이 말하는 질서가 소수를 구분하고 배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타인이 거부하는 구걸하는 행위도 이번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언제부터 우리가 보기 불편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장애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들의(?) 경계’로부터 아무 권한도 없이 쫓아내는 것을 당연시 한 것인지, 따뜻한 봄날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모습에 더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하고 있는 일이 바로 26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아이에게 말걸기

우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은 “형제복지원이란 곳의 이름은 들어봤다. 하지만 잘 모른다”라고 답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랑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시설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때는 올림픽 전이라 사회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 갱생시키기도 했지”라며 그런 곳 즉, 시설이라 일컬어지는 곳의 목적과 기능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이란 주체의 명확성과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국가차원에서 한 일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사건으로 터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운영하던 놈(?)이 비도적적이고 부조리한 인간이었다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는지도 모른다. 고백하자면 나도 ‘한종선’이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살아남은 아이」의 공저자로 알려진 한종선 씨. 그는 8살의 나이였던 1984년 10월 16일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사회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진 1987년, 퇴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시설(소년의 집)로 옮겨진 사람이다. 2011년 도가니 영화로 인해 묻혀질 줄 알았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7년 만에 다시 사회문제화 되어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이는 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극악무도하고 심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왜 아무도 모르지?’라는 의문을 안고 혼자서 힘겹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알려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그때 구속되었던 원장 박인근이 현재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이란 이름만 갈아탄 복지법인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언론을 통해 죄를 반성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진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 사람으로 둔갑한 어이없는 현실을 그는 혼자 묵묵히 고발했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은 그렇게 해서 끊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자 서울로 상경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무더운 여름 1인 시위를 하던 모습을 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규찬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너무도 어이없는 그 때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떠올려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니 너의 목소리를 통해 알려내는 수밖에 없고 문제해결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후 한종선 씨와 전규찬 교수는 꾸준히 만나 잊혀진, 혹은 숨겨진 기억을 떠올려 기록하는 작업을 함

게 했고, 전규찬 교수는 그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가둬 두는 게 가능했던 사회적 상황, 정책, 그리고 시설을 통한 대감금의 역사를 서술한다. 거기에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의 인권침해 시설들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시설의 존재를 가능케 했는지에 대한 글이 덧붙여져 한권의 책 「살아남은 아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에서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한종선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감금, 학살, 노예화에 대한 해결을 결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인권단체들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매우 건조한 어투로 전달했는지, 대부분은 너무 과거의 사건이고 자료가 없고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라 새로운 증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어디에서도 손잡아 주지 않았다. 내가 활동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단지 “나는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다. 억울하다”는 전화 한통 달랑 했을 뿐이고 찾아오거나 사건을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상담의 하나로 받아들이고는 자료가 없으니 인터넷을 뒤져 당시 사건의 내용을 파악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76년부터 87년까지 죽어나간 사람만 513명이란 공식 통계가 있었고 당시 거리에서 구걸한다는 이유로, 옷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형제복지원 등의 수많은 부랑인수용시설에 끌려가 감금당한 채 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범죄자나 노예 취급당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니 도통 어디서 해결 지점을 찾아야 할 지 막막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와 재심청구를 할 만한 증거를 구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정도로 이 사건은 ‘이미 물 건너 간’ 사건 썸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그에게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외롭게 24시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에게 두 번의 사형선고를 내리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이도저도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건의 핵심에 있던 박인근이 여전히 땡땡거리는 부산 지역의 유지로, 명망있는 사회복지사업가로, 교육가로, 사회복지법인협의체 회장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찝찝하게 목덜미를 잡았다. 게다가 장애인,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빌미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14억이나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말이다. 지자체의 허가과정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대출을 가능하게 한 거대한 힘은 무엇이였을까? 이 건으로 부산시와 해당 구의 공무원 16명이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 이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 혹은 대표적인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임혀지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종선 그를 만나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때의 사건은 무엇인지, 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부정과 비리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힘은 무엇이고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되풀이되며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이다.

“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란... 아픈 질문

그러나 그를 직접 만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관심의 이유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적 상황과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시설의

비뚤어진 역사와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한종선, 그를 만나고 나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 시설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억과 고통, 상처가 사람들의 평생을 옳아매고 있다는 점이 가슴을 후벼댔다. 이걸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이다. 물론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왜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허름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함부로 범죄자 취급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종선 씨는 3년간 있었던 형제복지원 안에서 그의 기억과 고통으로 38살이 된 지금도 그를 휘감고 있어 인생의 새로운 경험에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누나는 똑같은 상처로 26년 내내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 당시 그 안에는 감금당해 숨죽여 살았던 사람이 3천 5백 명이나 된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같은 이름의 시설이 각 시도마다 하나씩 있었으니 실상 피해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어마어마 할 것이다. 문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는 매한가지였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억압당한 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온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혹시 어디선가 제2, 제3의 한종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다가서자.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지금은 초동모임의 수준이지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22일 『26년 전 그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한종선과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책 출간된 이후 그의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의 용기에 힘입어 “나도 형제복지원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은 이런 과거를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형제복지원 같은 곳에 끌려간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차별적인 공감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칫 실수를 해도 겁먹고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평범한 일상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커밍아웃’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낮게 조용히 천천히 입을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는 결코 잊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현재의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온당한 삶이지 않을까. 잊혀진 과거를 기준으로 ‘나’가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평생을 분열과 혼돈으로 살게 된다. 우리는 모두 그 시대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국가가 사회정화, 질서유지, 공공의 안전 등을 운운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마구 잡이로 잡아 가뒀을 때 우리는 그걸 국가정책이라 일컬으며 지지하거나 방관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공모자였다. 이제 다시 힘겹게 입을 여는 그들의 낮은 목소리에 우리가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공모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공모자였음을 시인하고 그 고통을 공감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협력자로 나설 것인가의 기로에서, 이제 판단과 실천만이 남아 있다. “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한종선의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아니면 언제?

지난 2013년은 아우슈비츠에서 실제 경험한 10개월간의 참상을 ‘이것이 인간인가’란 제목으로 기록한 프리모 레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지 26주년이 되는 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지 26년이 되는 1987년에 그는 생을 마감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수용소의 참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저 멀리 이국 땅에서는 나치수용소의 참상을 알린 저명한 작가가 죽음으로 고통을 마무리했다.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새롭게 나타난 지금, 레비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레비와 같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인과 시민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과오로 받아들여 진심으로 사죄했다. 어떻게 하면 공모자에서 피해자의 협력자로 거듭날 것인가 토론하고 실천하며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나치라는 과거사가 지금의 독일이라는 국가를 일정정도 상식이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만든 건 아마 그러한 철저한 반성과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법과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직접 만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가 8명이다. 그 중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2명,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자는 사람이 1명, 형제복지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는 사람이 1명 있었다. 8명 중 6명이 정신적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 층에서 나오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 모습이 나타나면, 앞으로 숨어있는 아니 나타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천천히 말을 걸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이 현재 처해진 모습이 상상돼 가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대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외면은 참혹하게 슬픈 수용소, 시설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짝했던 ‘도가니’는 명백한 국가책임, 사회연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아니 물었어도 정부가 외면했고 사회복지계는 뿔뿔이 흩어졌다. 사회복지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여전히 시설을 ‘서비스’의 하나로만 접근했다.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는 사건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도 얻었지만 그 이상의 것에 발을 옮기지 못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을 프리모 레비가 쓴 아우슈비츠의 실상을 다룬 소설 제목으로 대신한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번 <세월호>참사를 보면서 내내 <형제복지원>이 겹쳐졌다.

<세월호> 사건의 전말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데,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매체들은 모두 선장의 납득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와 탐욕에 눈이 멀어 비정상적으로 여객선을 개조하고, 법적인 규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승인이 떨어지고, 그 승인은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관리들이 포진되어 있는 선박회사들의 모임인 해양선급과 해양조합 등이 저지른 행위였다. 결론이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까지 로비해 영터리 법 하나 고치지 못했다니, 이는 분명 행정부, 입법부, 비영리단체, 사업주, 사원 모두 이 사회적 타살의 공범들이 분명하다.

게다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윤00은 회사 이름을 몇 번이나 바꾸고 몇 십개의 계열사 임직원도 서

로 얽혀있거나 자주 자리를 바꾸는 등 운영 측면에서 혹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거짓된 수를 썼다. 거기에 종교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이용했다니 그저 ‘악’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함을 느낀다.

도대체 이 총체적으로 비뚤어진 난국을 과연 30여 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니 방치가 아니라 유지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하나의 고리만 끊었어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품고 바다를 건너려던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어둡고 긴 침묵의 카르텔 속에 마몬(재물)의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넨 이 비극적인 상황을 나와 우리, 한국 사회 모든 시민들은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용인하는 사회 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세월호> 사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가, 내내 머릿속에 오버랩 된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연 상 드러난 실체는, 87년 1월 약 3,200여명이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수의 시민들이 무고하게 끌려가 강제수용 되었으며, 군대식 운영으로 폭력과 성폭력이 난무했고 75년부터 86년까지 사망자 수가 무려 513명이었고 이는 단일 장소에서 벌어진 한국 사회 최대의 학살사건이란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 진실은 무엇일까.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원장이었던 박인근 씨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나왔고, 최종적으로 강제 감금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판결을 한 사람이 박근혜 정권 초대 총리지명자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변호사(법무법인한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심한 외압이 있었다고 했다. 횡령액이 총 11억 원 이상이었는데 1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해 그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검찰 지휘부는 10억 미만으로 하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고, 부산시장 또한 직접 전화해 “박 원장을 풀어주라”고 까지 했다고 한다. 김용원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박 원장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무슨 수를 쓴 건지 시내에 있는 사우나를 가는 현장 사진이었다. 최근 한 지인이 박인근과 89년 같은 감옥에 있었다고 말해 깜짝 놀랐는데, 잊고 있다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며 떠올렸으며, “그는 감옥에서도 황제처럼 지냈다”고 회상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박인근 구명운동, 혹은 수사방해와 사건 은폐, 왜곡의 상황은 2013년 ‘삼성년’이란 책을 쓴 전 중앙일보 이용우 기자 또한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취재 경험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국가적 비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었다. 또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평친 ‘사회정화’란 국가정책에 시민들이 동참했다. 생계를 위한 거리의 노점상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고 치우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눈 감았고, 그러면서 ‘수용소=시설’의 존재를 인정했다. 결국 전두환은 이런 시민들의 호응을 토대로 박인근에게 동백훈장, 장애인의 날 표창 등을 수여하며, “박인근 원장은 훌륭한 사람ियो. 그 사람 때문에 거리의 거지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यो”라는 칭송(?)까지 전달했다. 과거의 박인근은 부정과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정책을 대신 수행한 정권의 총복이었고 정권유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내게 <세월호> 사건과 <형제복지원>이 유사하다는 것은 박인근 원장이 89년 출소이후 지

금까지 여전히 복지재벌로 살고 있고, 그 배후에 한국의 수많은 사회복지법인 단체, 지자체, 관련 법, 금융당국, 종교계...모두가 있다는 점이였다.

89년 출소한 그는 구속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이용해, 법인 이름을 재육원으로 바꾸어 이사장이 되었다. 87년 사건이 터진 후, '형제복지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라는 것은 순진한 우리들의 기대였다. 형제복지원 연혁을 각종 공문과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수집해 파악해보니 형제복지원은 단 한 번도 폐쇄 혹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박인근 원장은 시설에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인 이름을 바꾸어가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민들을 우롱했다. 이사장, 이사 등록 또한 수시로 '했다, 안했다'를 반복했고, 측근들로 이사진을 구성해 늘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것이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되고, 형제복지지원재단을 물려받은 아들 박천광은 2년 구형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부산지역의 사회복지법인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보다 '시장과 시의회를 찾아다니며 박인근 구명운동'을 펼쳤다. 사회복지법인들은 부정과 비리 앞에서도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다. 서로가 공모자임을 보여준다. 최근 형제복지지원재단은 박인근 측근들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고, 올 2월 법인 이름을 '느헤미야'로 바꿨다. 여전히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법인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적 독립적 고유 권한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비는 100%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활동을 국가를 대신해 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부산시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박인근이 운영하는 법인은 종합선물 세트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6명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달랑 하나 운영할 뿐이며 법인 전입금은 한 푼도 없다. 오직 수익사업만을 위해 부산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112억 원을 불법대출 받았다면 너무나 뻘한 상황 아닌가. 사회복지법인이 한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부산시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올바른 관리감독의 모습이다. 하지만 왜 지금껏 침묵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일까? 2012년 감사에서 16명의 공무원이 연루돼 징계 받은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인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 전문가 집단들. 잘못된 운영을 눈감아주거나 뒷돈을 받으며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지자체와 사회복지 실천을 늘 선한 의지로 생각하며 훌륭한 사람일 것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가난한 장애인과 노인은 수용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국가정책.

이 모든 것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을 낳고 있는 공모자들이 아닐까.

<세월호>를 둘러싸고 '해피아'란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보며, 마찬가지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생각한다.

공고한 이 침묵의 카르텔을 끊고 '복지마피아'란 구조를 깨, 인권과 공공성을 가장 우선에 둔 국가정책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다들 쉬쉬하면서 혼자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워지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짜로 개, 짐승만도 못하게 그곳에서 살았으니 박인근은 우리에게 사과 해야죠. 무릎을 꿇든 뭘 하든지. 박인근뿐만 아니라 전두환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두환이 지시한 거잖아요.”

“부모 밑에서 학교 다니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평범하게 성장하는 과정으로 왔으면 평범하게 안 살겠나... 뭐 그런 아쉬움이 많죠.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나 봐요.”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지, 항상 의심이 들어요. 삶에 당위가 없어요. 그 핵심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하지 않을까.

주제발표 :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

- 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 금형민(우만종합사회복지관)
-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 정한별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사회복지실천 사례

- 노인성 치매(장기요양 2등급)가 진행 중이신 66세 양OO 어르신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안되고, 동작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 막내딸 가족과 생활하고, 수발자 도움 없이는 개인위생 관리 불가능한 상황임. 가족의 의뢰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함.
- 아침마다 수영에 어려움. 차에 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힘이 쉰 으셔서 수영과정에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됨. 센터에 계시는 동안도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야 한다며, 센터 밖으로 나가서 직원이 쫓아나가 인계하여 돌아오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짐.
- 어르신의 돌발행동으로 다른 어르신들 또한 동요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실천가의 고민



- 양OO 어르신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돌봄이 집중되어 다른 이용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형평성이 낮아짐.
-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우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어 걱정스러움.
- 그럼에도 다른 어르신의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 이용종결을 권유해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을 끌어 안고 가야 할지 딜레마에 놓여있음.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인권적 이슈(1)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 결정권)**
: 스스로 결정이 아닌 가족의 요구에 따른 센터 이용, 자신의 결정권이 없고,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어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 (사회복지사는 이용인의 자율과 독립성을 최대한 조성하여 사회복지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인권적 이슈(2)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됨. (모든 사유 기록,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관련 원칙들(1)

- **세계인권선언**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중략) 자의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25조 의식주, 의료 및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생활수준을 (중략)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인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이들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이들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의 인종과 이력을 향유할 자격이 없다.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1)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관련 원칙들(2)

-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 제 1조 자기결정
: 이음인은 누구나 기술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음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
 - 제 4조 안전과 편의증진
: 이음인은 기관 이용 시 어떠한 물리적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 받아 안전과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



지역사회와 치매어르신

사례 개입 및 지원

- **가족과의 상담**
- 어르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어르신 행동에 다른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
- 다른 어르신들의 욕구와 충돌되어지는 지점의 대안 마련

- **이용인+가족의 욕구를 권리로서 인정**
- 센터이용을 전제로 가족 돌봄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
- 다른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배치
- 공익요원 1인이 전담 케어, 산책 등 외출 지원

- **구조적 접근**
-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 체계 확보
- 2014년 7월 신설된 장기요양서비스 치매특별등급은 프로그램지원에만 적용되어 실질적 일상생활과 보호 및 돌봄에 충족되지 못함.
- 치매전담서비스 실시 필요..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사회복지실천 사례

오**(39세/북한이탈주민/2013년 5월 지역배정)

- 탈북과정에서 알게 된 남자와 동거.
- 전 재산을 동거남성에게 주었으나, 남성은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과 도박을 할.
- 이로 인한 싸움으로 인근에서 민원 발생
- 손목찰과상, 이마찰과상, 복부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치료.
- 동거남성이 지속적으로 폭행 할.
- 낮에 술을 마시고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해 동거남성과 헤어지고 싶은데 남성이 혼인신고를 원해 고민된다고 하며 울음.
- 동거남성과의 분리를 원하는 한편 심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보임.
-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으나, 상담을 기피 할.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실천가의 고민

-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가 상담한 결과 우울증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의사소견에 따라 약물치료까지도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상담 받고 병원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음.
- 동거남성과의 불화, 폭행 등으로 중국으로 도망치기 까지 하면서도 폭행으로 인한 신고나 이혼소송 등을 하는 것도 꺼려하고 있음.
- 정서적 불안감, 폭행, 경제적 어려움 등 전반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누구와도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전문가를 연계하는 것이 지나친 사생활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됨.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인권적 이슈(1)

- 자기결정권의 원칙

: 이용자의 욕구가 최대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의사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거남성과의 분리를 원하면서도, 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 등 전문적인 개입을 거부.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인권적 이슈(2)

- 생명보호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본적인 생존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즉,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인간존엄성에 기초하여 생존권 보장활동에 헌신해야 한다.

동거남성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 보호에 우려가 있는 상황.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인권적 이슈(3)

- 사생활 보호의 원칙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받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와 정착도우미 봉사자 외에는 누구와도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관련 원칙들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관련 원칙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본적인 생존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1조. 자기결정

이용인은 욕구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용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실재(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결정

사례 개입 및 지원

-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자와의 민주적 관계형성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남편과의 이혼보다도 이용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이용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무조건 문제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이용자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분임토론 : 인권실천을 위한 사례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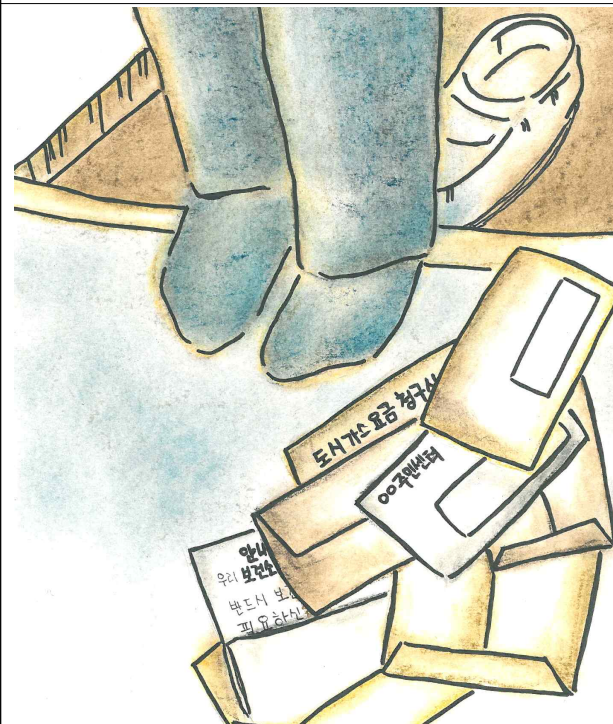
- 1) HIV-에이즈 감염인과 지역사회
- 2) 폭력성을 가진 이용인과 직원의 인권
- 3) 시설이용인의 준비되지 않은 자립육구
- 4) 사회복지실천가의 출산과 육아휴직

인권 실천을 위한 사례토론 ① “ HIV-에이즈 감염인과 지역사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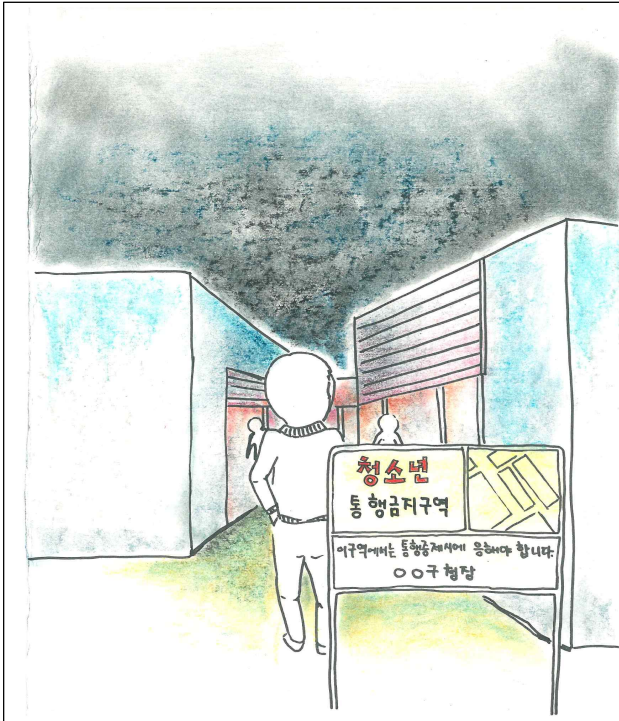


50대 정범수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일용 직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감기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던 중 피검사를 통해서 HIV-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집세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로 나오지 않은 채 홀로 외로이 자신의 질병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범수씨는 결혼을 하거나 여자 친구가 있는 게 아니기에 가끔 성매매업소 직업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욕구(성)를 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선불리 어떠한 조인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건소, 주민센터 등)관리대상이기는 하지만, 정범수씨가 직접 정기적으로 찾아와야만 치료 및 약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일일이 찾아가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센터는 복지관 사례로 관리하며 연계하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 그래도 이분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먼저인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 징검다리 질문들

- 발화자(사회복지 실천가)가 가장 우려하는 /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사례의 인권적 이슈는 무엇이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근거는?
- 정범수씨와 발화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인권 실천을 위한 사례토론 ②

“ 폭력성을 가진 이용인과 직원의 인권 ”



김민서
20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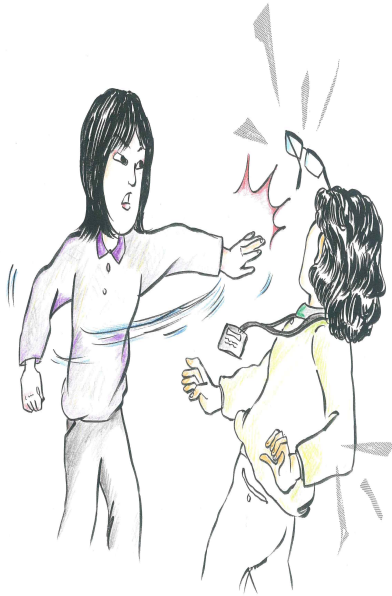


24세의 이다솔씨는 지적장애 2급, 그리고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이전 시설에서 특수학교 전공과 2학년 과정을 졸업했고,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큰 행사 때 공연을 할 정도로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김민서
2014.11

하지만 심각한 행동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는 다솔씨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감정기복이 나타났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는 고집이 강한 다솔씨는 점차 폭력성향이 두드러졌고, 다른 이용인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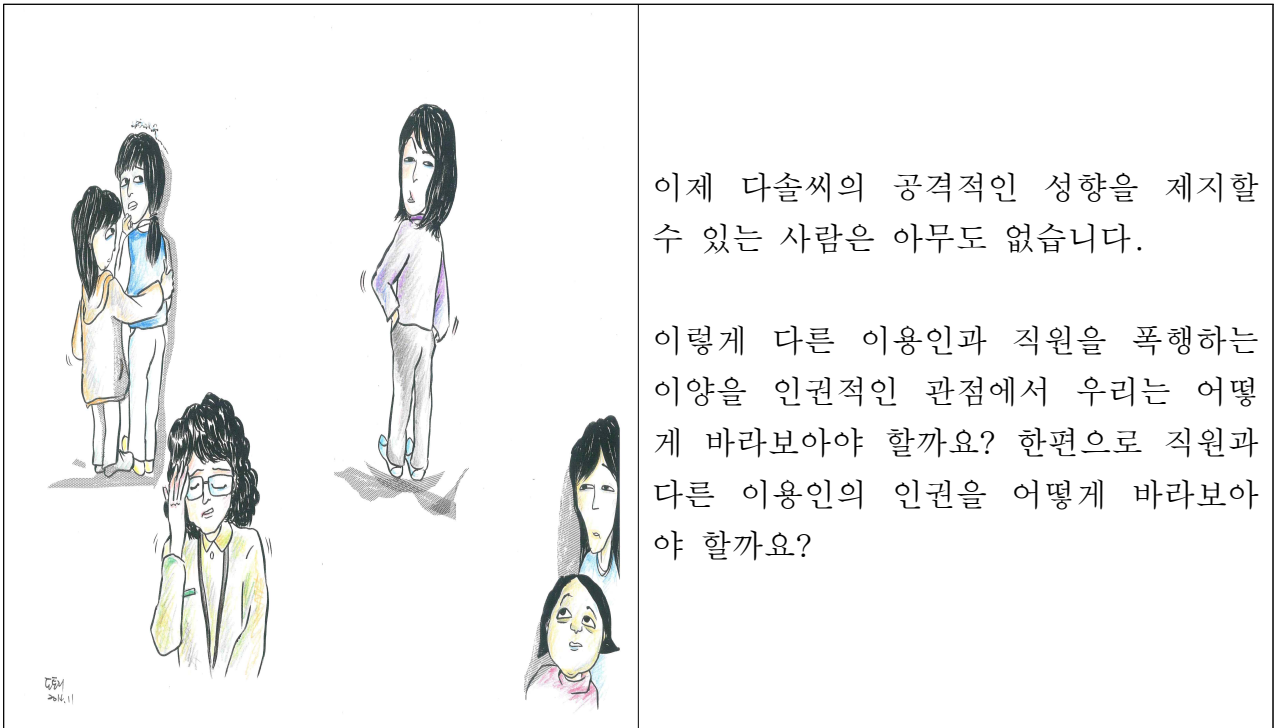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직원들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안경을 파손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자폐성향이 있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다솔씨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면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는 모습이 이제는 더욱 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다솔씨가 다른 이용인을 폭행했을때, 이용계약서의 제한조치에 따라 생각하는 의자, 분리, 구속(이용자의 손이나 팔을 뒤에서 잡는 것), 규제 및 통제를 반복하여 진행했지만 폭력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슬씨의 공격적인 성향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용인과 직원을 폭행하는 이양을 인권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한편으로 직원과 다른 이용인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징검다리 질문들

- 발화자(사회복지 실천가)가 가장 우려하는 /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사례의 인권적 이슈는 무엇이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근거는?
- 다슬씨와 발화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인권 실천을 위한 사례토론 ③

“ 시설이용인의 준비되지 않은 자립욕구 ”



이사람씨는 41세 지적,지체 중복 1급 장애인이며, 다른 기관에서 거주하시다가 2012년 우리기관에 전원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이사람씨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양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발을 사용하여 간단한 단어를 쓰거나 그림을 통해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기에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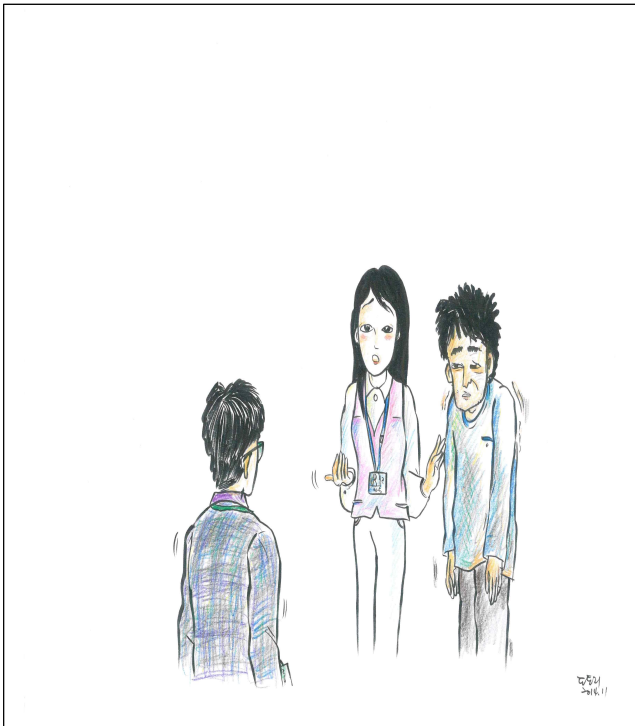


식사도, 간단한 작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누군가 먹여주는 것을 싫어해서 도움을 거부하고 어렵게 어렵게 혼자 식사를 해결하려 하는 등 항상 시설 밖으로 혼자서 자립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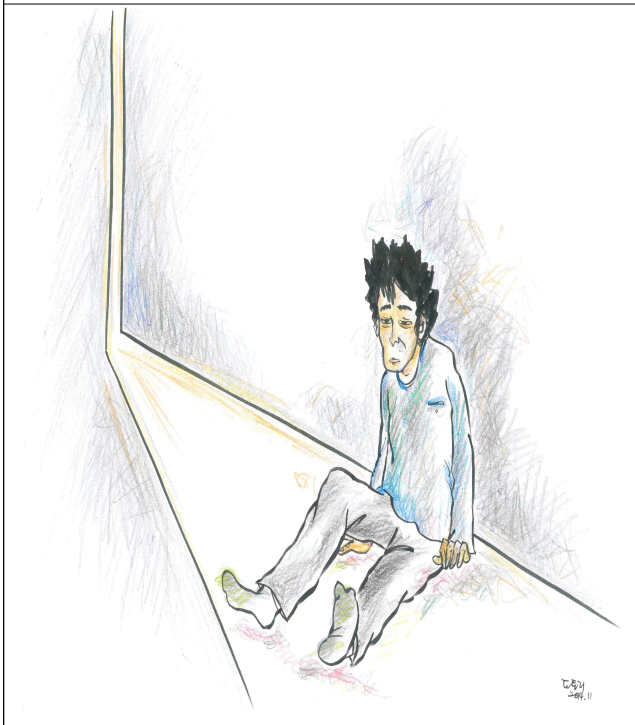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경제력 및 안정된 주거 등 아직 자립생활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람씨의 자립욕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자람씨의 상황을 봤을 때 들어줄 수가 없었던거죠.

어느 겨울밤, 이자람씨는 가출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던 것이었죠.



가출한지 3일이 지나 이자람씨는 다시 기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30여만원의 현금은 다 쓰지 않고 노숙생활동안 행인들로부터 적선을 받게 되어 수중에 있던 돈은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숙인 쉼터와 여관에서 숙박을 해결하다가 여관주인의 신고로 결국 기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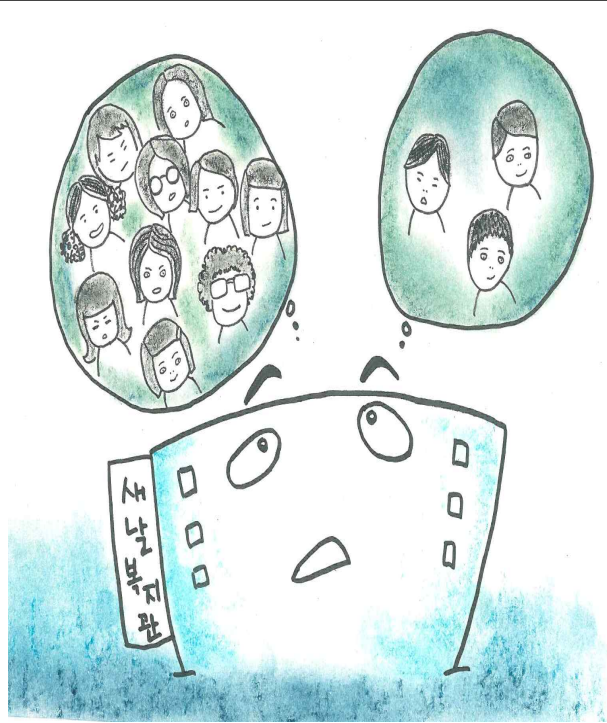
이자람씨는 지금도 자립을 간절히 원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도 자립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리의 판단과 자립하고 싶다는 이자람씨의 욕구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징검다리 질문들

- 발화자(사회복지 실천가)가 가장 우려하는 /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사례의 인권적 이슈는 무엇이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근거는?
- 이자람씨와 발화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은 무엇인가요?

인권 실천을 위한 사례토론 ④

“ 사회복지실천가의 출산과 육아휴직 ”



어느 작은 중소도시의 신생 복지관. 전체직원 중 여성 직원의 숫자가 남자직원 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평범한 복지관 의 모습입니다. 전체 상근 직원 24명 중 남자직원은 단 3명. 여성근로자가 유독 많은 것은 이 복지관만의 상황은 아닐 테고, 바쁜 복지사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복지관 입니다.



신생복지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8년 차에 접어든 이 복지관은 여직원들이 다 수이다 보니, 여성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여직원 모임] 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는 복지관 환경미화나, 단합 모임, 취미/여 가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직원 모임의 리더는 복지관 부장님이 담당해 주셨고, 몇 년간 이러 한 모임은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달에 한번 있는 여직원 정기 모임에서 부장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올 초에 복지1팀 김팀장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곧바로 복지2팀 황선생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겹쳐서 저로서는 좀 난감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결혼과 연이은 출산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이 몰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여직원들이 기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좀 아니까, 팀 간 순번을 좀 정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기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앉은 총무팀 박주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몇 번째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여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갈 수 있을까? 다른 팀 선생님과 겹치면 기관에서 싫어할 꺼 같은데... 걱정이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희 복지관 여직원들 참 대단하다, 기관을 위해 그런 논의도 하고,, 근데 정말 웃음도 않나온다 쳇!!! “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자로서 겪는 인권적 상황,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안은 없을까요?]

☑ 징검다리 질문들

- 발화자(사회복지 실천가)가 가장 우려하는 /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 사례의 인권적 이슈는 무엇이고,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근거는?
- 이외에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자로서 겪는 인권적 상황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자료

- 1) 세계인권선언문
- 2)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3)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세계인권선언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1 조

1.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 15 조

1.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

- 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 2.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3.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 1.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 1.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 1.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 3.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3 조

- 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 2.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4.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 1.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 26 조

1.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 27 조

1.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그리고 인권을 위해 헌신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열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실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솔선한다.

우리의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그들과 직접 일하거나 그들의 상태를 변화,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제도 개선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개인이 부당

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며,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강령

I.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의무와 권리

1.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사회복지사는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선호사항이나 개인적 특징, 조건, 지위를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으로 취한 언행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완수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 갖는 고도의 성실성과 공정성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5) 사회복지사는 인가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실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 6)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명의 수행에 있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7)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의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2)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실천지식을 규명하고 개발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 할 책임이 있다.
-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연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얻은 정보는 비밀 보장의 원칙 하에 다루어져야 하고, 연구수행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불편, 고민, 위해, 위험, 박탈 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의 과업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6)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하는 재교육 및 보수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수수료 책정시 사회복지사는 제공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비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한다.

2) 사회복지사는 업무적, 비업무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II.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최대한의 전문적 기술과 능력 및 헌신하는 마음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함으로써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의 입장과 이익을 최대한 대변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를 존중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대해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본질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제약과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정보를 공개한다.

7)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을 보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때 제3자의 비밀보장에 주의를 기울인다.

8)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0)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전문적 책임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 자신의 클라이언트

언트와 동등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동료와의 관계

1. 동료

-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이익과 관심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한다.
-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반 규정이나 강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한다.
- 4) 전문적인 판단과 수행을 방해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의 저해를 방지한다.
-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규정이나 강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 6) 동료 사회복지사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2. 수퍼바이저

-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를 공유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에 조력한다.
-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성적,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

1. 사회복지사는 인권의 존중과 인간의 평등을 위한 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국가사회정책의 형성, 개발,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법규제정을 요구하고 옹호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V. 사회복지사와 기관과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목표를 위해서만 기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3.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 와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제반 규정과 강령을 통해 공식적 절차로 거절한다.
4.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복지의 성장발전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에 힘쓴다.

VI.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소임에 맞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윤리 실천의 제고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에 따른 규정을 두고 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III. 사회복지사 선서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다음과 같이 하게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며 사회정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회체계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일하며,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발전에 기여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익 전문가로 일생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명예를 걸고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우리 사회는 누구나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받아들여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리며, 이용인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정의하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실천 1. 자기결정 | 이용인은 욕구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용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

실천 2. 정보접근 |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 또한, 인권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등 관련 자료를 기관에 소장하고, 이용인에게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인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실천 3. 사생활 보장 | 이용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지켜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정보와 사생활, 서비스 지원 정도 등이 이용인이 알지 못하는 내·외부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천한다.

실천 4. 안전과 편의증진 | 이용인은 기관 이용 시 어떠한 물리적 장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받아 안전과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

실천 5. 인권교육 | 이용인과 실천가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국내외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한다. 이를 통해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복지서비스 원칙을 채택하여 실천한다.

실천 6. 인권계획 |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인권실천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인권의 가치를 담은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실천한다.

실천 7. 인권위원회 | 인권적 사회복지실천을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인과 실천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천한다.

실천 8. 정책참여 |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이용인을 옹호하며 인권에 문제가 있는 사회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실천 9. 인권모델 |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모델로써 견인을 담당하고 허브기능의 역할을 실천한다.

실천 10. 인권연대 |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소속 기관은 위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고, 인권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사회복지 실천이 인권의 관점으로 재구성되기 위한 노력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